

의안번호	제846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5년 3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행정기구 개편(' 24.7.1.)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현 협의회 위원장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하고자 함.(안 제7조)
- 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을 신설하여, 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.(안 제9조의2)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불임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을 “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	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 위원장은 <u>양성평등가족정책관</u> 이 된다.	② ----- <u>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</u>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협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</u>
	<u>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

관련법령 발췌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행정기구 개편('24.7.1.)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-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, 안전검토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

3. 관련조문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)
- 회의(안 제10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
- 7명(최소참석인원)*100천원(참석수당)*2회

나. 추계 결과

- 조례가 제정될 경우,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7,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일반회계 7,000천원(도비 7,000천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 선 회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					
위원회 수당 (정책기획관 Pool)	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국고보조금						
자체 수입	도비 일반회계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
시·군비							
자부담		-	-	-	-	-	-